

# — 김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 —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11. 17일 김제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'97. 11. 25
- 다. 상 정 일 자 : 제 3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 1차( '97. 12. 22 )  
총무위원회에서 상정

## 2. 제안설명요지( 제안설명 :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)

### 가. 제 안 이 유

-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개정.시행( '96. 7. 1 )에 따라 각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관련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

### 나. 주 요 골 자

- 기금 조성의 재원중 ~ 청소년육성 지방위원 또는 독지가의 성금(품) ~ 을 삭제함

### 3.전문위원 검토 보고

-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1조 ~ 제5조 및 동법 시행령등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

### 4. 질의 및 답변

- 없 음

### 5. 심 사 결 과

- 총 11명위원중 8명 위원이 참석,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